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 외 이 주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유효기간 삭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조항 신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범죄 경력 자료 처리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외이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 삭제(안 제5조제3항)

- 1) 현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증빙서류로서 활용하는 기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

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1) 영사민원24, 해외이주창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함.

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안 제16조제2항제5호)

- 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4호)

- 1) 해외이주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에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2제4호에 범죄경력 자료에 대한 처리근거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23. 9.13 ~ 9. 25.)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비대상(사전심사 완료, 국무조정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 발급된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에 대해서도 이 영이 적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u><신설></u>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생략)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4. (생 략) <u><신 설></u> ③・④ (생 략)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4. ~ 6. (생 략)</u>	1. ~ 4. (현행과 같음) 5. <u>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 는 신분증 사본</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 은 영 제19조-----.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 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연 락 처	(032) 585 - 3180